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I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1 지정목적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II

지정요건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12.)을 준용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민법」상 법인·조합
- 2)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7)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9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년 4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4)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5)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관광두레 조성 사업) 참여 기업(관광두레 주민사업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가.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3]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 (예사: '21.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의 회계실무,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등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에서 이수 가능(www.seis.or.kr)

6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 2017.1.1.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 (예시) '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12월까지 신청제한, '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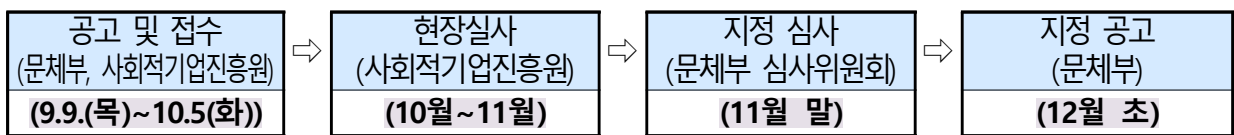
III

지정절차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공고(문체부)·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지정 심사(심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2 지정결과 발표 : 2021년 12월 초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발표

IV

지원내용

* '21년 기준 지원 사항

1 공통지원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재 정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200만원 ~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 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1차 년도) 10% → (2차 년도) 20% ○ 지원인원/기간 : 1명(고령자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2년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당해 년 최저임금 기준(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기간 : 최대 50인/ 2년

구 분	지 원 내 용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연 1천만원 이내 ○ 자부담률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 자부담률 : 1회 차 10% → 2회 차 20% → 3회 차 30%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5개 조합, 200억원 규모)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에 한함

2 특화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확대 및 컨설팅·홍보 등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50백만원 이내) → (성장·성숙기) 경쟁력 제고, 사업 확장(80백만원 이내) ○ (스포츠) 스포츠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아이디어 발굴, 현장실습, 창업 준비 → (3년 미만) 창업 보육을 통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마케팅 등(15~40백만원 차등) ○ (관광) 관광두레 조성 (관광두레 사업 운영 지역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자원 조사, 지역 진단 등) → (2년차) 창업, 시범사업 운영 → (3년차)사업체 운영, 경영 지원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 등 지원 ○ (관로) ▲문화예술 기업·단체 대상 단계별 관로지원 상담(공공시장 진출 준비, 아이템 발굴·시장 분석, 제안서 작성, 사업매칭 등 지원), ▲한국관광공사 납품 및 계약 체결 맞춤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동호회·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제품(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배포,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등
공공 기관 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 스포츠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 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경영학 및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 문체부 특화지원 사업 및 지원 사항 지속 발굴 예정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컨설팅 및 추천

- (인증추천) 문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천 대상자 결정 및 고용부로 추천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V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9월 9일(목) 09:00 ~ 10월 5일(화) 17: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 공통서류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붙임 제3호의1~제3호의5 서식]

② 유급근로자 명부(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붙임 제4호 서식]

③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 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④ 공증받은 정관, 규약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 서식]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제6호 서식]

⑦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 사업 및 위탁 사업 참여 실적 등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기준)

VII

심사기준

지정요건 충족 여부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사업내용의 우수성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문화 분야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 심사

VIII

문의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044-203-239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7729)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참고 1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참고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권역별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0	033-749-3900	gwcs0524@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070-4763-0120	pns@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86-7970	0303-0945-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1호	053-956-5002	053-267-5003	se@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053-217-5003	ucsr@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naver.com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 10층(달동)	052-267-6176	052-267-6177	ulsan@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9492	032-421-9585	inseca@daum.net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gmail.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hanmail.net